

##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4월 7일 목포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4월 14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본 회 의(제1차) : 보건소장 정 병 조
- 총무사회위원회 : 위생과장 김 일 용

#### 나. 제안이유

-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중앙지침(보건복지부령 제724호)에 의하여 시·도가 동일하게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, 2000. 11.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예 시·군·구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관리운용 (안 제2조)
  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시금고에 따로 설치
- 회계관계 공무원 (안 제3조)
  - 기금출납명령관 : 보건소장
  - 분임기금출납명령관 : 위생담당 업무과장
  - 기금출납공무원 : 식품위생업무담당
- 심의 위원회 구성 (안 제4조)
 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
  -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- 용자사업 (안 제7조)
  -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 용자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위원회 활동

- 제9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4. 14)
 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-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4. 16)
  - 안전검토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

-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은 중앙지침에 의거 도에서 동일하게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2000. 11. 27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여 「수정가결」 하였음.

6. 심사결과

【수 정 가 결】

⇒수정내용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회계 관계공무원) 2.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 : 위생과장 3. 기금출납원 :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제4조(기금 심의위원회 구성등)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금담당 주사가 된다.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제8조(융자금의 대여)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 제9조(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)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, 이율,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	제3조(회계 관계공무원) 2. ----- : 위생담당업무과장 3. 기금출납공무원 : 식품위생업무담당 제4조(기금 심의위원회 구성등) ④ ----- 기금담당이다. ⑤ -----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----- . 제8조(융자금의 대여) ----- 금융기관에 위탁하여----- . 제9조(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) -----조건 이율,한도액----- .